

창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530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5308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가단4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승, 담당변호사 오유경, 김유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우

변론종결 2022. 12. 22.

판결선고 2023. 2. 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가단4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54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8. 3. 19. 접수 제18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9. 27. 접수 제66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 ‘1980. 11. 12.’을 ‘1980. 12. 11.’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 ‘1997. 9. 20.’을 ‘1997. 9. 11.’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 ‘소유권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E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인없이 마쳐진 최초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마쳐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승소의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이 된다거나
종국적인 권리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D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E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것이 곧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 득 관, 판사 윤 정, 판사 이큰가람